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91호

2019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조선산업 불황으로 매출·생산 감소위기에 직면한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위기극복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2019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경기순환적 위기 지속으로 매출·생산 감소위기에 직면한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위기극복과 핵심경쟁력 유지

* 조선업종 영위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조선업 관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기술확보에 필요한 전주기 통합 지원

2. 사업구성

○ 2019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①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과 ②사업다각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구성

<내역사업 구성내역>

구분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7개 내외)	사업다각화 기술개발(3개 내외)
지원 규모	- 국비 40.46억 내외 * 과제 당 최대 6억원 이내	- 국비 17.34억 내외 * 과제 당 최대 6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또는 '입찰수주증빙' 必** - 컨소시엄 구성(2개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사업다각화 희망) * 사업다각화 추진에 대한 타 산업 입찰수주실적 또는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지원 내용	- 수요처 요청사항을 목표로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확보를 위한 R&D 자금 지원 * 설계변경,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타 산업(해상·육상플랜트, 건설업, 구조물 제작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희망하는 조선업종 기업의 기술확보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설계변경,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사업별 지원규모는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규모

○ 신규 약 10개 과제 내외(국비 57.8억원 규모)

* 컨소시업 구성 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관기관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 사업비는 최대 6억원까지 신청 가능

-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과제당 국비 지원금은 최대 6억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7개 내외 과제 선정

- **(사업다각화 기술개발)** 과제당 국비 지원금은 최대 6억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3개 내외 과제 선정

구분	내용	비고
①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 7개 내외, 과제당 국비 최대 6억원 이내	세부내역별 지원 규모는 조정 가능
②사업다각화 기술개발	• 3개 내외, 과제당 국비 최대 6억원 이내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신청규모, 평가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모방식 및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조선산업 전·후방,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 사업다각화** 가능 분야

*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 사업다각화 기술개발

5. 지원 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수행기간) : 12개월(‘19.9.1 ~ ‘20.08.31)

* (공고기간) 2019.8.13. ~ 2019.9.16

○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조선산업 위기지역*<u>**에 한하여 산업·고용 위기현황과 수월성을 검토하여 지원**</u>

*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등 2개 유형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50% 이상 (현금 50% 이상)	20% 이상 (현금 20% 이상)

* 공공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조선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18년 조선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추경) 기준 준용)

6. 지원내용

○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수요처의 수요*에 맞는 기술확보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국내)**자발적구매동의서, 입찰수주증빙 등, **(해외)**개발요청서류, 입찰수주증빙 등

<수요처 충족요건>

구분	세구분	지원내용
①국내 수요처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조건충족 必)
②국외 수요처	공공부문	- 외국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포함) 등 해외 현지법인

※ 민간부문은 국내・외 상관없이 출자지분관계가 없어야 하며, 세부 조건은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참조

○ **(사업다각화 기술개발)** 조선업종 영위 기업이 타 산업(해상・육상플랜트, 건설업, 구조물 제작 등)업종으로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고도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동 사업은 기술개발(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수요처 수요에 맞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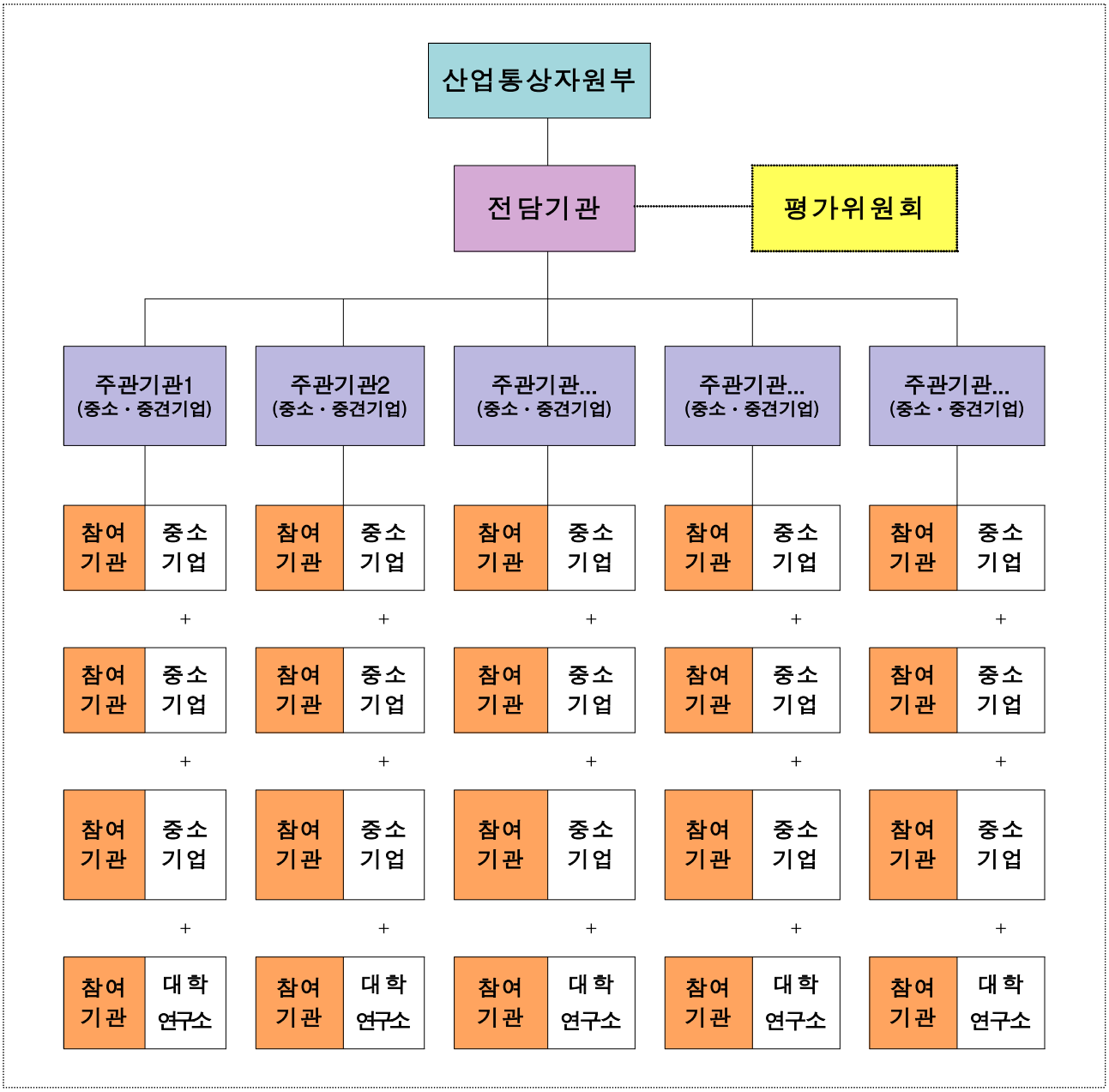
▣ 과제수행을 통해 만들어진 시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시제품 제작은 기술의 구현과 실증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함.

7.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II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조선 · 해양플랜트 전·후방 연관 산업*, 사업다각화 가능 분야** 영위 중소 · 중견기업

*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 사업다각화 기술개발

- **(주관기관)**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지역 본사·공장·부설연구소 소재
- **(참여기관)** 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소재지 무관)

2. 신청자격

①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수요처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 수요처 명의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또는 '입찰수주증빙'을 확보한 조선업 중소·중견기업(해양·조선 기자재 부품 업종 등)

* **(국내)**자발적구매동의서, 입찰수주증빙 등, **(해외)**개발요청서류, 입찰수주증빙 등

✪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또는 입찰수주증빙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한함**

- **(주관기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中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산업 전·후방 연관 중소·중견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경남, 울산, 군산, 전남, 부산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관련산업 전·후방 연관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② **(사업다각화 기술개발)** 타 산업(해상·육상 플랜트, 건설업, 구조물 제작 등)업종으로 사업다각화를 희망하는 조선업 중소·중견기업(해양·조선 기자재 부품 업종 등)

- **(주관기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中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산업 전·후방 연관 중소·중견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경남, 울산, 군산, 전남, 부산

*** 사업다각화 추진에 대한 타 산업 입찰수주실적 또는 추진계획을 제시 하여야 함.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조선업 전·후방 연관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 수요처는 참여 불가

✪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사업다각화 기술개발사업 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기관은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국내수요처>

❶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❷ 민간부문
▣ 대기업, 중견기업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조선업종 관련 제조업 선사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중견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 중견기업인정보마당, http://hpe.or.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 이상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해외수요처>

❶ 공공부문 : 외국정부, 국제기구
❷ 민간부문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포함) 등 해외현지법인(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無)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 등급 이상일 것

★ 수요처는 수행기관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입처로서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불가능

Ⅲ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경상기술료 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Ⅳ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시행계획	**'19년 시행계획(3차) 수립**	KIAT	-
②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	'19. 8월
③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KIAT	'19. 8~9월
④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19. 9월
⑤ 과제 선정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9. 10월
⑥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신청기관→KIAT	'19. 10월
⑦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조정위원회	'19. 11월 초
⑧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19. 11월 초
⑨ 과제수행	**<사업화 기술개발>** ● 사업계획서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기관	'19.9~'20.8
⑩ 상시점검	**<현장확인>**	KIAT→주관기관	수시
⑪ 결과보고서 제출	● 협약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주관기관→KIAT	~'20.10월초
⑫ 최종평가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회	~'20.11월

* 상기일정 변동 가능

Ⅴ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오프라인 제출이 불가

•온 라 인 등록기간 : '19년 8월 13일(화) 10:00부터 9월 16일(월) 17:00까지 •오프라인 제출기간 : '19년 9월 17일(화) 17:00까지 * 오프라인 제출은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지 못한 서류에 한하며, 사업계획서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 주관기관 주요업무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 → 공고조회
⇩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PDF, 스캔본)**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 오프라인 제출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기술실용화팀)

신청서식	제출방법	제출서류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업	기관
1호	온라인	사업계획서 1부		●	
2호	온라인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1-1)	●	●	●
2-1호	온라인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서식 1-2) -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16,'17,'18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	X
3호	온라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	●
4호	온라인	과제 참여 수행기관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조회 동의서 각 1부(서식 3)	●	●	●
5호	온라인	신용·재무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4-1, 4-2)	●	●	●
6호	온라인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서식 5-1, 5-2)	●	●	●
7호	온라인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서식 6)		●	
8호	온라인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7)	○	○	○
9호	온라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서식 8)	○	○	○
10호	온라인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서식 9)	◐	◐	X
11호	온라인	수요처의 입찰수주 증빙(별도 서식 없음)	◐	◐	X
12호	온라인	수요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별도 서식 없음) *원본대조필	◐	◐	X
13호	온라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X
14호	온라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	●	●
15호	온라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별도 서식 없음)	●	●	X
16호	온라인	우대사항 확인서(서식 10)	○	○	○
16-1호	온라인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사본	○	○	○

* ● 필수제출, ◐ 주관/참여 중 1개만 제출 가능, ○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김동욱	02-6009-4367	사업 및 공고관련 문의
		김동영	02-6009-4362	사업 및 공고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 운영실)	-	02-6009-4379, 4374, 4375, 4376	접수 SYSTEM 문의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반영비율)	①사전서류검토	②발표평가	③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필요시	100점 (우대사항 가점 별도)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 산·학·연·회계 외부전문가를 활용 가능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재무건전성 자가진단표(신청기관 입력 기준)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발표평가**

▪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100점)

<평가기준>

○ **사업기획 정도(30점), 수행능력(40점) 및 결과활용(30점) 등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사업다각화 기술개발사업 신청 과제 中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상 우대사항(별첨3 참조)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우대가점(2점)을 부여

** 사업다각화 기술개발사업 신청 과제 中 "해상풍력발전" 등 사업다각화에 대한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또는 '입찰수주증빙' 제출 과제는 우대가점(2점) 부여

○ **사업기간(12개월)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비중을 강화**

* 우대가점을 제외한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

* 「지원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기획 (30)	부합성	ㅇ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10
	구체성	ㅇ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기술개발 목표, 추진일정·전략 등)	10
	사업비	ㅇ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능력 (40)	조직구성	ㅇ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기관 등)	15
	전문성	ㅇ 참여인력의 업무분담 적절성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	15
	수행경험	ㅇ 수행기관의 R&D 수행을 통한 제품화 및 사업화 경험	10
결과활용 (30)	시장부합성	ㅇ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15
	기대효과	ㅇ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15
계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통과기준 : 70점 이상(우대사항 가점 제외) 中 상위과제

-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우대사항

	세부내용	점수
1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결과물을 활용하여 공공구매 연계가 가능한 경우로 공공 수요처*의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3점
2	ㅇ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신규연구원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2점
3	ㅇ 외부 민간기술을 도입한 기업(Buy R&D)으로서 최근 2년 이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도입은 미해당)	2점
4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5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점
6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점
7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점
8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9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점
10	ㅇ「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전환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법인인 경우	1점
11	ㅇ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사업다각화 기술개발 사업에 한하여, 사업다각화 추진에 대한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및 '입찰수주증빙' 제출 시	2점
12	ㅇ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주관기관 기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영암·목포·해남), 울산(동구), 전북(군산)	2점
	합 계 (최대한도*)	**5점**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3.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iat.or.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로 처리할 수 있다.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의제9호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및 우선주)를 통한 신규자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위기업종 지원특례사항 확인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불포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인건비 최소 편성비율

▪ 산업기술 R&D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각 사업연차별 35%이상 최소(의무) 인건비 편성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연차별 총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산업통상자원부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고 위기업종 지원 특례

□ 신규 청년고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과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제13항에 의거하여, 적용을 배제(조선업 위기상황 고려)

□ 현금 인건비 계상 및 사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에 의거,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

- 동 사업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현금 인건비 계상 및 사용이 가능

  *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사용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정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조선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

* '17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 개발사업 및 '18년 조선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추경) 기준 준용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조선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일부 완화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